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82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어기구 · 박수현 · 진선미
이수진 · 임오경 · 문대립
김영배 · 이현승 · 백종현
박희승 · 최혁진 · 한지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되었음.

그러나 무단 점유·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임.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와 농지 등 서민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산림으로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를 다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

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 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u><신 설></u>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2조의2(무단점유 국유림에 관 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 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 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 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u> <u>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u>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
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
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
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
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

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 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